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1, 2단지 전체안내 (1, 2단지 중복청약 가능합니다)

C2-2BL (1단지)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1번지 (성남판교지구 C2-2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1층~19층 공동주택 5개동 4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주택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분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	노부모부양		
민영 주택	2013000519-01	96.8150A	96A	96.8150	27.6661	124.4811	9.6939	50.1034	184.2784	36.1056	35	1	1	33	35
	2013000519-02	96.1480B	96B	96.1480	27.0611	123.2091	9.6270	49.7584	182.5945	35.8569	33	1	0	32	33
	2013000519-03	96.6140C	96C	96.6140	27.5771	124.1911	9.6740	49.9994	183.8645	36.0307	17	0	0	17	17
	2013000519-04	110.2550	110	110.2550	29.8411	140.0961	11.0400	57.0594	208.1955	41.1179	35	1	1	33	35
	2013000519-05	123.3390A	123A	123.3390	33.4621	156.8011	12.3500	63.8300	232.9811	45.9973	70	3	2	65	70
	2013000519-06	123.4360B	123B	123.4360	33.5370	156.9730	12.3590	63.8800	233.2120	46.0335	33	1	0	32	33
	2013000519-07	129.2530B	129B	129.2530	36.6310	165.8840	12.9420	66.8914	245.7174	48.2029	31	1	0	30	31
	2013000519-08	129.3990C	129C	129.3990	34.2900	163.6890	12.9560	66.9660	243.6110	48.2573	32	1	0	31	32
	2013000519-09	142.0130	142	142.0130	38.3290	180.3420	14.2195	73.4940	268.0555	52.9615	127	6	3	118	127
	2013000519-10	203.7700	203	203.7700	58.5600	262.3300	20.4027	105.4552	388.1879	75.9928	4	0	0	4	4

C2-3BL (2단지)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0번지 (성남판교지구 C2-3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1층~20층 공동주택 5개동 5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주택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분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	노부모부양		
민영 주택	2013000520-01	96.8150A	96A	96.8150	27.5320	124.3470	11.1460	52.5660	188.0590	36.2298	76	3	2	71	76
	2013000520-02	110.2550	110	110.2550	29.6890	139.9440	12.6930	59.8640	212.5010	41.2593	76	3	2	71	76
	2013000520-03	129.4770A	129A	129.4770	34.7356	164.2126	14.9060	70.3001	249.4187	48.4525	152	7	4	141	152
	2013000520-04	129.2530B	129B	129.2530	36.4521	165.7051	14.8800	70.1790	250.7641	48.3687	72	3	2	67	72
	2013000520-05	129.3990C	129C	129.3990	34.1110	163.5100	14.8970	70.2580	248.6650	48.4233	72	3	2	67	72
	2013000520-06	142.0130	142	142.0130	38.1330	180.1460	16.3490	77.1070	273.6020	53.1437	62	3	1	58	62
	2013000520-07	203.7700	203	203.7700	58.2780	262.0480	23.4590	110.6380	396.1450	76.2542	4	0	0	4	4

※ C2-2BL(1단지) 모집공고는 매일경제신문에, C2-3BL(2단지) 모집공고는 한국경제신문(또는 타 신문)에 나뉘어 게재됩니다. 단, C2-2BL(1단지)와 C2-3BL(2단지)의 분양가는 동일합니다.

|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분양일정 |

청약접수	특별공급	6월 3일(월)	당사 홍보관 접수 10:00~14:00	
	1 순 위	6월 4일(화)	인터넷 접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2 순 위			
	3 순 위	6월 5일(수)	인터넷 접수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 www.apt2you.com

|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1단지	6월 12일(수)	당사 홍보관 게재
	2단지	6월 13일(목)	당사 홍보관 게재
당첨자 계약	6월 18일(화) ~ 20일(목) (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홍보관		

---

alphadom city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주상복합 C2-2BL 입주자 모집공고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분양하는 아파트는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3단계)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과 별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성남판교PF사업)은 블록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어 아파트를 제외한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은 현재 건축계획을 수립중으로 금번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과 연계성이 없으며, 또한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의 건축계획이 인허가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분양계약 체결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군용항공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3년 5월28일(화요일)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판단 기준일임)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3.06.18)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주택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개정2012.9.25)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이 없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alpharium.co.kr)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주택과 – 14414 (2013.05.27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1번지 (성남판교지구 C2-2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1층~19층 공동주택 5개동 4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금회 공급에서 제외된 시설 : • 업무동(판매포함) – 지상1층~지상13층 1개동, 연면적 27,426㎡
• 판매동 – 지상1층~지상2층 1개동, 연면적 3,115㎡
• 지하주차장동(지하1층 판매 포함) – 지하3층~지하1층, 1개동, 연면적25,199㎡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주택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분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	노부모부양		
민영 주택	2013000519-01	96.8150A	96A	96.8150	27.6661	124.4811	9.6939	50.1034	184.2784	36.1056	35	1	1	33	35
	2013000519-02	96.1480B	96B	96.1480	27.0611	123.2091	9.6270	49.7584	182.5945	35.8569	33	1	0	32	33
	2013000519-03	96.6140C	96C	96.6140	27.5771	124.1911	9.6740	49.9994	183.8645	36.0307	17	0	0	17	17
	2013000519-04	110.2550	110	110.2550	29.8411	140.0961	11.0400	57.0594	208.1955	41.1179	35	1	1	33	35
	2013000519-05	123.3390A	123A	123.3390	33.4621	156.8011	12.3500	63.8300	232.9811	45.9973	70	3	2	65	70
	2013000519-06	123.4360B	123B	123.4360	33.5370	156.9730	12.3590	63.8800	233.2120	46.0335	33	1	0	32	33
	2013000519-07	129.2530B	129B	129.2530	36.6310	165.8840	12.9420	66.8914	245.7174	48.2029	31	1	0	30	31
	2013000519-08	129.3990C	129C	129.3990	34.2900	163.6890	12.9560	66.9660	243.6110	48.2573	32	1	0	31	32
	2013000519-09	142.0130	142	142.0130	38.3290	180.3420	14.2195	73.4940	268.0555	52.9615	127	6	3	118	127
	2013000519-10	203.7700	203	203.7700	58.5600	262.3300	20.4027	105.4552	388.1879	75.9928	4	0	0	4	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	층별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5%)	2회(5%)	3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13.07.15	13.07.31	13.10.10	14.02.10	14.06.10	14.10.10	15.02.10	15.06.10	입주시
96.8150 (96A)	2층	2	402,809	195,691	598,500	29,925	29,925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119,700
	3층	2	414,655	201,445	616,100	30,805	30,805	61,610	61,610	61,610	61,610	61,610	61,610	61,610	123,220
	4층	2	428,654	208,246	636,900	31,845	31,845	63,690	63,690	63,690	63,690	63,690	63,690	63,690	127,380
	5층~7층	6	447,297	217,303	664,600	33,230	33,230	66,460	66,460	66,460	66,460	66,460	66,460	66,460	132,920
	8층~10층	6	465,940	226,360	692,300	34,615	34,615	69,230	69,230	69,230	69,230	69,230	69,230	69,230	138,460
	11층~15층	10	475,228	230,872	706,100	35,305	35,305	70,610	70,610	70,610	70,610	70,610	70,610	70,610	141,220
	16층~19층	7	484,583	235,417	720,000	36,000	36,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144,000
96.1480 (96B)	2층	1	407,924	198,176	606,100	30,305	30,305	60,610	60,610	60,610	60,610	60,610	60,610	60,610	121,220
	3층	2	419,904	203,996	623,900	31,195	31,195	62,390	62,390	62,390	62,390	62,390	62,390	62,390	124,780
	4층	2	434,038	210,862	644,900	32,245	32,245	64,490	64,490	64,490	64,490	64,490	64,490	64,490	128,980
	5층~7층	6	452,950	220,050	673,000	33,650	33,650	67,300	67,300	67,300	67,300	67,300	67,300	67,300	134,600
	8층~10층	6	471,795	229,205	701,000	35,050	35,050	70,100	70,100	70,100	70,100	70,100	70,100	70,100	140,200
	11층~15층	10	481,218	233,782	715,000	35,750	35,750	71,500	71,500	71,500	71,500	71,500	71,500	71,500	143,000
	16층~18층	6	490,640	238,360	729,000	36,450	36,450	72,900	72,900	72,900	72,900	72,900	72,900	72,900	145,800
96.6140 (96C)	2층	1	402,742	195,658	598,400	29,920	29,920	59,840	59,840	59,840	59,840	59,840	59,840	59,840	119,680
	3층	1	414,588	201,412	616,000	30,800	30,800	61,600	61,600	61,600	61,600	61,600	61,600	61,600	123,200
	4층	1	428,587	208,213	636,800	31,840	31,840	63,680	63,680	63,680	63,680	63,680	63,680	63,680	127,360
	5층~7층	3	447,162	217,238	664,400	33,220	33,220	66,440	66,440	66,440	66,440	66,440	66,440	66,440	132,880
	8층~10층	3	465,805	226,295	692,100	34,605	34,605	69,210	69,210	69,210	69,210	69,210	69,210	69,210	138,420
	11층~15층	5	475,160	230,840	706,000	35,300	35,3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70,600	141,200
	16층~18층	3	484,448	235,352	719,800	35,990	35,990	71,980	71,980	71,980	71,980	71,980	71,980	71,980	143,960
110.2550 (110)	2층	2	468,026	227,374	695,400	34,770	34,770	69,540	69,540	69,540	69,540	69,540	69,540	69,540	139,080
	3층	2	481,756	234,044	715,800	35,790	35,790	71,580	71,580	71,580	71,580	71,580	71,580	71,580	143,160
	4층	2	498,043	241,957	740,000	37,000	37,000	74,000	74,000	74,000	74,000	74,000	74,000	74,000	148,000
	5층~7층	6	519,648	252,452	772,100	38,605	38,605	77,210	77,210	77,210	77,210	77,210	77,210	77,210	154,420
	8층~10층	6	541,319	262,981	804,300	40,215	40,215	80,430	80,430	80,430	80,430	80,430	80,430	80,430	160,860
	11층~15층	10	552,155	268,245	820,400	41,020	41,020	82,040	82,040	82,040	82,040	82,040	82,040	82,040	164,080
	16층~19층	7	562,991	273,509	836,500	41,825	41,825	83,650	83,650	83,650	83,650	83,650	83,650	83,650	167,300
123.3390 (123A)	2층	4	534,118	259,482	793,600	39,680	39,680	79,360	79,360	79,360	79,360	79,360	79,360	79,360	158,720
	3층	4	549,800	267,100	816,900	40,845	40,845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163,380
	4층	4	568,308	276,092	844,400	42,220	42,220	84,440	84,440	84,440	84,440	84,440	84,440	84,440	168,880
	5층~7층	12	593,008	288,092	881,100	44,055	44,055	88,110	88,110	88,110	88,110	88,110	88,110	88,110	176,220
	8층~10층	12	617,708	300,092	917,800	45,890	45,890	91,780	91,780	91,780	91,780	91,780	91,780	91,780	183,560
	11층~15층	20	630,092	306,108	936,200	46,810	46,810	93,620	93,620	93,620	93,620	93,620	93,620	93,620	187,240
	16층~19층	14	642,476	312,124	954,600	47,730	47,730	95,460	95,460	95,460	95,460	95,460	95,460	95,460	190,920
123.4360 (123B)	2층	1	534,118	259,482	793,600	39,680	39,680	79,360	79,360	79,360	79,360	79,360	79,360	79,360	158,720
	3층	2	549,800	267,100	816,900	40,845	40,845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163,380
	4층	2	568,375	276,125	844,500	42,225	42,225	84,450	84,450	84,450	84,450	84,450	84,450	84,450	168,900
	5층~7층	6	593,076	288,124	881,200	44,060	44,060	88,120	88,120	88,120	88,120	88,120	88,120	88,120	176,240
	8층~10층	6	617,776	300,124	917,900	45,895	45,895	91,790	91,790	91,790	91,790	91,790	91,790	91,790	183,580
	11층~15층	10	630,092	306,108	936,200	46,810	46,810	93,620	93,620	93,620	93,620	93,620	93,620	93,620	187,240
	16층~18층	6	642,476	312,124	954,600	47,730	47,730	95,460	95,460	95,460	95,460	95,460	95,460	95,460	190,920
129.2530 (129B)	2층	2	552,357	268,343	820,700	41,035	41,035	82,070	82,070	82,070	82,070	82,070	82,070	82,070	164,140
	3층	2	568,577	276,223	844,800	42,240	42,240	84,480	84,480	84,480	84,480	84,480	84,480	84,480	168,960
	4층	2	587,759	285,541	873,300	43,665	43,665	87,330	87,330	87,330	87,330	87,330	87,330	87,330	174,660
	5층~7층	6	613,334	297,966	911,300	45,565	45,565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182,260
	8층~10층	6	638,909	310,391	949,300	47,465	47,465	94,930	94,930	94,930	94,930	94,930	94,930	94,930	189,860
	11층~15층	10	651,629	316,571	968,200	48,410	48,410	96,820	96,820	96,820	96,820	96,820	96,820	96,820	193,640
	16층~17층	3	664,417	322,783	987,200	49,360	49,360	98,720	98,720	98,720	98,720	98,720	98,720	98,720	197,440
129.3990 (129C–104동1호라인)	2층	1	547,915	266,185	814,100	40,705	40,705	81,410	81,410	81,410	81,410	81,410	81,410	81,410	162,820
	3층	1	564,068	274,032	838,100	41,905	41,905	83,810	83,810	83,810	83,810	83,810	83,810	83,810	167,620
	4층	1	583,047	283,253	866,300	43,315	43,315	86,630	86,630	86,630	86,630	86,630	86,630	86,630	173,260
	5층~7층	3	608,421	295,579	904,000	45,200	45,200	90,400	90,400	90,400	90,400	90,400	90,400	90,400	180,800
	8층~10층	3	633,794	307,906	941,700	47,085	47,085	94,170	94,170	94,170	94,170	94,170	94,170	94,170	188,340
	11층~15층	5	646,447	314,053	960,500	48,025	48,025	96,050	96,050	96,050	96,050	96,050	96,050	96,050	192,100
	16층~18층	1	659,100	320,200	979,300	48,965	48,965	97,930	97,930	97,930	97,930	97,930	97,930	97,930	195,860
129.3990 (129C–103동1호라인)	2층	1	534,858	259,842	794,700	39,735	39,735	79,470	79,470	79,470	79,470	79,470	79,470	79,470	158,940
	3층	1	550,540	267,460	818,000	40,900	40,900	81,800	81,800	81,800	81,800	81,800	81,800	81,800	163,600
	4층	1	569,116	276,484	845,600	42,280	42,280	84,560	84,560	84,560	84,560	84,560	84,560	84,560	169,120
	5층~7층	3	593,816	288,484	882,300	44,115	44,115	88,230	88,230	88,230	88,230	88,230	88,230	88,230	176,460
	8층~10층	3	618,583	300,517	919,100	45,955	45,955	91,910	91,910	91,910	91,910	91,910	91,910	91,910	183,820
	11층~15층	5	630,967	306,533	937,500	46,875	46,875	93,750	93,750	93,750	93,750	93,750	93,750	93,750	187,500
	16층~18층	3	643,351	312,549	955,900	47,795	47,795	95,590	95,590	95,590	95,590	95,590	95,590	95,590	191,180
142.0130 (142)	2층	7	623,766	303,034	926,800	46,340	46,340	92,680	92,680	92,680	92,680	92,680	92,680	92,680	185,360
	3층	8	642,072	311,928	954,000	47,700	47,700	95,400	95,400	95,400	95,400	95,400	95,400	95,400	190,800
	4층	8	663,744	322,456	986,200	49,310	49,310	98,620	98,620	98,620	98,620	98,620	98,620	98,620	197,240
	5층~7층	24	692,617	336,483	1,029,100	51,455	51,455	102,910	102,910	102,910	102,910	102,910	102,910	102,910	205,820
	8층~10층	24	721,423	350,477	1,071,900	53,595	53,595	107,190	107,190	107,190	107,190	107,190	107,190	107,190	214,380
	11층~15층	40	735,893	357,507	1,093,400	54,670	54,670	109,340	109,340	109,340	109,340	109,340	109,340	109,340	218,680
	16층~18층	16	750,296	364,504	1,114,800	55,740	55,740	111,480	111,480	111,480	111,480	111,480	111,480	111,480	222,960
203.7700 (203)	최상층 (복층)	4	1,132,780	550,320	1,683,100	84,155	84,155	168,310	168,310	168,310	168,310	168,310	168,310	168,310	336,620

▣ 공통 유의사항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성남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3참고) • 본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이나 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채권매입상한액을 산정한 결과 산정액은 '0' 원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경비실 등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플러스옵션)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 업무 및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였는 바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등기시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하여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함.
- • 서비스 면적은 시공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을 1층으로 적용하였음)
-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써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배정된 세대중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 / 노부모	수도권	2013.06.03(월) 10:00~14:00	홍보관 방문접수	•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홍보관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번지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단,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28)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초과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02㎡초과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35㎡초과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당첨자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 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1)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5% 이내인 15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대상세대 : 총15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96A	96B	96C	110	123A	123B	129B	129C	142	203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	1	–	1	2	1	1	1	3	–	1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	1	–	–	–	3	–	4
	합 계	1	1	–	1	3	1	1	1	6	–	15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48(2012.05.14)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 · 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 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인 7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28)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된 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 총7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96A	96B	96C	110	123A	123B	129B	129C	142	203	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	1	2	–	–	–	3	–	7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홍보관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통사항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2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성남 판교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본 주택은 아래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별 · 지역별로 세대수를 비율 배분하여 공급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성남시(1년이상) : 30%	경기도(6개월 이상) : 20%	수도권(공고일 현재) : 50%
2013.05.28	2012.05.28 이전부터 거주	2012.11.28 이전부터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 2012.05.28 이후 성남시 전입자 및 2012.11.28 이후 경기도 전입자는 직전 거주지(경기도 또는 수도권)거주자로 분류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 · 군 사이에서 전입 · 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각 주택형별 · 지역별 청약자 수가 신청지역(성남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후순위 청약자에게 공급함

- • 신청자격 및 요건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에 청약가능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2.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속한 분 • 추첨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성남시 경기도 수도권
		전주택형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각 형별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주택형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 해당 되시는 분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전원. 단,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함).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3. 공급일정

청약 구분	접 수 일 자	접 수 방 법	접 수 장 소
1 · 2순위	2013.06.04(화) 08:00~17:30	인터넷 청약	• 접수 사이트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3순위	2013.06.05(수) 08:00~17:30		

- 주택소유사실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3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청약가능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4.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최초 청약 신청전까지 신청 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5.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초과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02㎡초과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35㎡초과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6.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전용면적 기준	가 점 제	추 첨 제
전용면적 85㎡초과	50%	5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상기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 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7.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 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①)	32	만30세미만 미혼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②)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③)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비 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함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8. 감점 산정기준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구 분	기 준	소유주택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9.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 한 자로서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 2, 3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분, 노부모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분)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홍보관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거주자로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중 추첨제 대상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하며,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고,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 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 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4.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 3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는 분(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5.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 없이 인터넷(창구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입력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항목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참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자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 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3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청약예금통장(1 · 2순위자에 한함) 및 예금인장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기준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7.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 참여 ※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8.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대 상	환 불 기 간	환불방법	구 비 서 류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3.06.13(목)	자동이체	• 본인이 3순위 청약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됨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에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Ⅲ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 약 체 결
특별공급	다자녀/노부모	• 일시 : 2013.06.03(월) 16:30 • 장소 : 당사 홍보관 게재	• 일시 : 2013.06.12(수)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일시 : 2013.06.18(화)~2013.06.20(목)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홍보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3.06.12(수) • 장소 : 당사 홍보관 게재		
	2순위			
	3순위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홍보관에서 당첨자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홍보관에서 공개 추첨함)후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주택형별로 일반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물량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알파돔시티 홍보관에 별도 공고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음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확인은 당첨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접수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접수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접속 → 당첨사실 조회
	이용기간	2013년 06월 12일(수) ~ 2013년 06월 21일(금) 10일간	
전화 (ARS)	전화번호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이용방법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름	
	이용기간	2013년 06월 12일(수) ~ 2013년 06월 21일(금)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3년 06월 12일(수)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Ⅳ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 : 2013.06.18(화) ~ 2013.06.20(목)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홍보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분양사무실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 등 · 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주택소유 현황 서약서 (홍보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주민등록 초본 1부 (3년 이상 거주 등본상 미확인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재외동포,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군용항공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며, 재외국민,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해당구청(분당구청)에 토지취득 허가신청 후 계약 체결하여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외환은행 본 · 지점 무통장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 금 주
외환은행	계약금, 중도금, 잔금	631-000506-486	(주)알파돔시티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 대출기관 : 별도 안내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세대는 지정 납부일에 현금 납부 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 및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예정일 : 2015년 11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의 사전 점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입주예정일 약1~2개월전 계약자들에 점검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Ⅴ 추가 선택품목 계약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호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기본제공품목
일괄 선택	1) 창호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문틀(상부덧판,문선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하드웨어 포함), 디지털도어록	목재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PVC 내부창호(주방발코니 도어 포함) 및 발코니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소방관련 방화문, 도어록
	2) 바닥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바닥재[온돌마루, 현관디딤판(천연석), 현관바닥(폴리싱타일)], 걸레받이, 굽도리, 발코니 타일마감(시멘트 몰탈 포함)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욕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 선홈통, 방수공사
	3) 벽	각실, 거실, 주방, 현관	초배지,벽지 및 벽체 마감,아트월(타일, 벽지, 가구 등 일체포함), 장식판넬	석고보드(해당 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 발코니벽 도장
	4) 천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우물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천장틀 위 석고보드, 발코니 천장 도장
	5)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거실 및 주방, 침실, 현관 등의 디자인조명기구 설치, 특수스위치(홈네트워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대기전력차단 등)	배선기구류(일반 스위치 및 콘센트 등), 각 부위 일반 형광등
	6) 욕실	공용, 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인테리어(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거울,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일체), 욕실타일, 천장재(천정틀, 배기휀 포함), 욕실스피커폰	조적 방수, 미장, 설비매립배관(단부 보호처리), 전기배관/배선
	7) 주방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일체(상하부장 및 상판, 주방벽 마감, 빌트인가전, 주방액정TV,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액세서리 일체포함), 행거 액세서리류, 수전류(수전, 절수페달포함)	설비배관(급수, 난방, 오배수 등 매립 배관 및 가스배관, 단부보호처리)
	8) 기구 및 기타 사항	각실 출입문 등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거울, 각종 선반, 주방 상하부장 등)	설비배관(단부보호처리), 거실월 패드,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주 택 형	96A	96B	96C	110	123A	123B	129B	129C	142	203
금 액	26,066	25,799	26,005	28,873	32,316	32,352	33,591	33,147	36,519	53,121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옵션세대는 발코니확장 공사 신청과 플러스옵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옵션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주 택 형	확 장 위 치	발코니 확장금액
96A	거실, 침실1, 침실2	3,794
96B	거실, 침실1, 침실2	3,192
96C	거실, 침실1, 침실2	3,591
110	거실, 침실1, 침실2	3,531
123A	거실, 침실1, 침실2	2,724
123B	거실, 침실1, 침실2	2,724
129B	거실, 침실1, 침실2	2,973
129C	거실, 안방, 침실2, 가족실	3,435
142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3,943
203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4,672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외환은행	631-000506-461	(주)알파돔시티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2010.2.18.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시스템 에어컨)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적 용	수량	금 액	설 치 위 치	비 고
선택1 (기본설치)	96A, 96B, 96C, 110, 123A, 123B, 129B, 129C	3	4,800	거실1+주방1+안방1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공지
	142, 203	4	6,500	거실(2대)+주방1+안방1	
선택2 (전체설치)	96A, 96B, 96C, 110, 123A, 123B, 129B	5	7,500	거실1+주방1+안방1+침실1+침실2	
	129C	6	8,800	거실1+주방1+안방1+침실1+침실2+가족실1	
	142	7	10,400	거실(2대)+주방1+안방1+침실1+침실2+서재1	
	203	9	12,300	거실(2대)+주방1+안방1+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1+서재1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품목인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외환은행	631-000506-461	(주)알파돔시티

Ⅵ 기 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 목	공 종	금 액	비 고
택지비	1. 택지공급가격	182,522,517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2. 기간이자	30,873,727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3. 그 밖의 비용	5,047,338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택지비 소계	218,443,582	
공사비	1. 토목공사	17,291,685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2. 건축공사	69,423,665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3. 기계설비	10,522,201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4. 그 밖의 공종	18,112,515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소 계	115,350,065	일반관리비 및 이윤
	그 밖의 공사비	13,115,959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공사비 소계	128,466,024	
간접비	1. 설계비	2,206,486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2. 감리비	2,283,541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3. 부대비	2,446,210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 · 가스 ·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간접비 소계	6,936,237	
그 밖의 비용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24,815,356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건축비 계		160,217,618	
합 계		378,661,200	

- 주택법 시행령 제42조3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 휴게소 등

▣ 주택성능등급 인정 항목별 등급표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1 2 3 **4**
	중량충격음		1 2 3 **4**
	화장실 소음		**1** 2 3 4
	경계소음		1 **2** 3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1 **2** 3 4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1 2 3 **4**
		공용부분	1 2 3 **4**
	내구성		1 2 **3**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1 2 **3** 4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1 2 3 **4**
	일조(빛환경)		1 2 3 **4**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1** 2 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1** 2 3
	에너지성능(열환경)		**1** 2 3 4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 2 3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1 2 **3**
		공용부분	1 2 **3**
화재 · 소방 등급	화재 · 소방	감지및 경보설비	1 2 **3**
		제연설비	1 2 **3**
		내화 성능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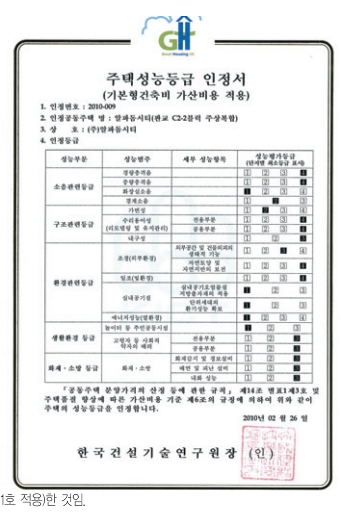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적용)
1. 인정번호 : 2010-009
2. 인정공동주택 명 : 알파돔시티(판교 C2-2블럭 주상복합)
3. 상 호 : (주)알파돔시티
4. 인정등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1제3호 및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합니다.

2010년 02 월 26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

※ 주택성능등급 인정은 2010년 2월 26일에 취득(2009년 8월 24일에 고시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51호 적용)한 것임.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구 분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 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고효율기자재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 용
대기전력차단 장치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 용	절수기기	적 용

■ 청약시 유의사항

1.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지역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가점제 당첨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로 판명되거나, 추첨제 당첨자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청약자격에 미달한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3.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5.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6.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설계고지사항

〈지구여건〉

1. 금번 분양하는 아파트는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3단계)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과 별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성남판교PF사업)은 블록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어 아파트를 제외한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은 현재 건축계획을 수립중으로 금번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과 연계성이 없으며, 또한 중심상업지역(6블럭, 7블럭)의 건축계획이 인허가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분양계약 체결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2.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개발계획, 학교, 도로망, 공원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허가 관청 및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아파트 주변에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시설, 판교 수질 복원센터, 판교 환경 에너지 시설 등) 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시설물 및 구조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본 아파트는 군용항공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거단지 외부여건〉

1. 단지내 비주거시설(판매 및 업무시설)의 입주 시기는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음
2. 단지내 비주거시설의 외관,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위치, 보행동선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파트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단지 4면중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4. 배치도(CG, 모형)의 단지외 시설 및 단지 내,외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남측에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8호의 계획은 향후 실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부여건〉

1. 본 아파트는 탑상형, 판상형 건축물로 형별, 층별, 향별로 조망권,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 숙지하시길 바람
2. 본 아파트의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3.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면적은 각종 인허가 변경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공용시설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단지내 공개공지가 있으며, 단지내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에는 폭 3m 전면공지가 구성되어 있고 단지내 조성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는 보행자를 위해 상시 개방됨
7. 단지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소방비상차 구획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8. 분리수거대, 쓰레기 투입구(크린넷)설비의 위치 및 설치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주거동 1층에 필로티, 로비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있으며, 1층에 주거세대는 없음
11. 부대 복리시설은 105동 1층과 2층에 설치되며, 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 외부를 통해 이동해야 함 12.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13. 단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에 근접한 세대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4. 아파트와 비주거(업무, 판매)시설의 주차장은 분리되어 있음
15. 단지 차량 출입구는 단지 북측, 동측에 각 1개소가 있으며, 단지 북측 출입구는 공동주택 주차용도이며, 동측 출입구는 업무, 판매시설 주차용도임
16.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할 수 있음
17. 지하2층, 지하1층에 설치되는 공용 창고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입주민 전체 공용시설임
18. 101동, 103동, 104동 하부에 기계 · 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9. 105동 저층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옥상정원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0. 101동, 105동 저층부는 판매동과 일체형으로 형성됨. 단 판매동과의 통행 등 연계는 없으나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동 지붕에 의해 조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21. 최상층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2. 옥탑층 조경시설은 최상층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하였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개방되지 않을 수 있음
23.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24.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5. 단지 출입구, 문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26.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2009.08.27(제40차, 2009–73)]에 의거 "C2–2블럭 북측 완화 차로는 진출입구 주변 포함 전체 구간 설치"라는 심의 조건으로 인해 완화차로가 설치되었음. 건축심의(2009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35미터 도로 가 · 감속 차선 20M 정도 추가 설치 할 것"라는 조건으로 인해 완화 차로 설치되었음
27. 101동은 업무동과 인접하여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8. 본 단지는 기둥식 구조로써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건식벽체임.
29. 층상배관시스템은 최하층세대는 적용되지 않음

〈마감재 및 발코니 등〉

1.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표시된 마감자재 제품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고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2.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표시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음
3.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의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불편 등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표시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5. 일반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시행이나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6.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8. 전 · 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라 냉난방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9. 주방발코니와 주방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발코니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10.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1. 외부창호(발코니확장 창호 포함)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2.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3.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정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발코니 측 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15. 129㎡타입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발코니의 일부 구간은 욕실의 저소음 배관방식으로 인하여 천정 높이가 20㎝정도 낮음
16. 203㎡타입 상층부의 테라스와 방 사이에는 우수침투방지를 위해 약 20㎝ 턱이 생김 17.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8.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9. 조명, 등기구는 실제 시공시점 차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 가구 및 거울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위치의 바닥, 벽, 천정 부분은 별도마감이 없음
21. CG, 모형의 색채 및 외관 형태는 실공사시 공사여건 및 심의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2. 부대복리시설의 실내 · 외 마감재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비 고
건축 / 토목	㈜한국환경종합건축사 ㈜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	1,740,749,600원	VAT별도
전 기	㈜한국코아엔지니어링	228,291,593원	
소방 / 통신	㈜진광건설엔지니어링	106,904,984원	

※ 감리금액은 C2–2블록, C2–3블록 전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되어 블록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였음

▣ 분양보증사 및 보증금액 : 대한주택보증(주)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302,928,960,000원	제01292013–104–00006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사고의 내용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 함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
- **보증대상 제외사항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 및 분양권을 양수한 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체	㈜알파돔시티	129–86–16753
	롯데건설(주)	114–81–16377
	두산건설(주)	102–81–31754
	GS건설(주)	109–08–93670
	SK건설(주)	101–81–34928
※ (주)알파돔시티와 롯데건설(주), 두산건설(주), GS건설(주), SK건설(주)는 주택법 제10조등에 의거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함		
시공회사	롯데건설(주)	114–81–16377
	두산건설(주)	102–81–31754
	GS건설(주)	109–08–93670
	SK건설(주)	101–81–34928
	(주)서희건설	220–81–19330
	모아종합건설(주)	409–81–51156

▣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홍보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번지 분양문의 : 1666–0038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 : www.alpharium.co.kr

하늘이 내린 도시!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C2–2BL 분양일정

청약접수			
	특별공급	6월 03일(월)	당사 홍보관 접수 10:00~14:00
	1 순 위	6월 04일(화)	인터넷 접수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2 순 위		
	3 순 위	6월 05일(수)	인터넷 접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 www.apt2you.com

현장 및 홍보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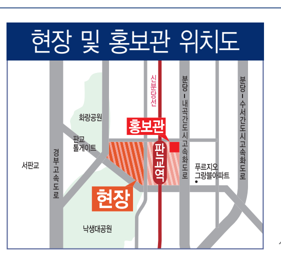

1666–0038

홍보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번지 [신분당선 판교역 1번출구 옆]

시행사 alphadom city 外 시공사 롯데건설 GS건설 SK건설 DOOSAN 두산건설 서희건설 모아종합건설

알파돔시티 **판교 알파리움**

알파리움 검색

www.alpharium.co.kr